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11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 : 노웅래 • 이수진(॥) • 이 학영

서영석 • 김승남 • 이해식

신정훈 • 양기대 • 최인호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함.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다른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유해하여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경부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 치(이하 저감장치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해외에서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 제82조, 제89조, 제92조 등).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를 "제조 또는 수입 하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 또 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 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 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 ⑨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4 및 제8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60조제7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 전제한장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5. 제60조제9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 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제89조제8호 중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0조제7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 또는 판매의 목적으 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2조제10호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10의2.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 칙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정치 등을 수입하는 자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82조, 제89조, 제92조 및 제94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u>제조·</u>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 는 수입하려-----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 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 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 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 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 전제한장치를 공급 또는 판매 하거나 공급 또는 판매의 목적 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 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 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 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 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능)	(1)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 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 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 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 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 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 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 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 조 · 판매 · 사용 금지 또는 제 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 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 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 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 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 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 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 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 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 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 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 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 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 7. (생략)
- 8. 제60조제1항에 따라 <u>배출가</u> 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 8의3. (생략) <신설>

<u>.</u>
1. ~ 7. (현행과 같음)
8 <u>배출가</u>
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8의2. • 8의3. (현행과 같음)
8의4. 제60조제7항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
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 또
는 판매하는 자

<u><신 설></u>

- 9. ~ 13. (생 략)
- ② ~ ⑤ (생 략)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장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의3. (생략)
 -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 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u>제조</u> 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u><신 설></u>

<신 설>

8의5. 제60조제9항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
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u>자</u>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1. ~ 7의3. (현행과 같음)
8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7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
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
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 또
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
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9. ~ 13. (생략)
-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9. (생략)
 -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 11. ~ 14. (생략)
-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0. (생 략) <신 설>

9. ~ 13.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조 또는 수입하				
는 자				
 11. ~ 14.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u>.</u>				
1. • 2. (현행과 같음)				
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배				
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				
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u>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1 ~ 10 (혀해과 간으)				

10의2.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

	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
	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
	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
	<u>용한 자</u>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